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  
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65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정(2022.7.5.시행)에 따라 영등포구의  
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 
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, 기본원칙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, 추진상황의 점검(안 제4조~제6조)

다. 조례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(안 제7조)

라.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(안 제8조)

마.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~제16조)

바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협력·교육·홍보 등(안 제17조~제2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의견

-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적인 참여를 위한 개선의견 반영(제10조제3항)

라. 입법예고(2022.10.13.~11.2./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

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~제3조는 총칙(목적, 정의, 기본원칙)에 관한 사항임.

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 등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.

- **안 제4조~제6조**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,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, 2년마다 점검하도록 정함.
- **안 제7조**는 조례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·개정할 때,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함을 명시함.
- **안 제8조**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·공표하도록 함.
- **안 제9조~제16조**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, 추진계획의 협의·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, 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신분(임기, 해촉, 제척 등), 의견청취 등을 명시함.
- **안 제17조~제20조**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의뢰 및 교육, 홍보,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 의뢰, 홍보 및 각종 단체, 기구 등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

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장기 추진계획을 통해 경제성장, 포용적 사회 및 기후·환경 위기 극복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과 조례의 목적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종합적,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	비고
지방자치단체 책무 (법 제4조)	3대 기본원칙 준수 등 5개 책무 규정	의무
지방기본전략 (법 제 8조)	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·이행, 지방기본전략 5년마다 전반적 재검토 및 정비	의무
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 (법 제9조)	5년 단위 지방추진계획 수립·이행, 지방추진계획 수립·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	의무
추진상황의 점검 및 정책 의견 제시 (법제11조~12조)	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, 지방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지자체장에 정책의견 제시 →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·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에 반영 노력	의무  재량
지표, 지속가능성 평가, 보고서 (법 15조~16조)	지자체는 지표 개발·보급, 지방위원회는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	의무
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(법 제15조~16조)	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다만, 시군구의 경우 실정에 맞추어 둘 수 있음	의무
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, 교육·홍보 (제22조)	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·정보 보급, 조사연구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업무수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력 가능	재량
지속가능발전 시책 (제23조~25조)	지속가능한 경제성장, 포용적 사회구현, 기후위기 대응 등 관련 시책수립·시행	의무
이해관계자 협력 (제26조)	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해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·재정적 지원 가능	재량
국민 의견의 수렴 등 (제29조)	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, 그 결과를 정보망을 통해 공개	재량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  
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66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22.4.21. 시행)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중복 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나.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다.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(‘사용·수익허가’ → ‘사용허가’)

(안 제15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30조)

라.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의2, 제6조, 제12조, 제13조, 제25조, 제27조, 제30조, 제31조, 제36조, 제73조)

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2.10.13.~11.2./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(“이하 공유재산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조례 위임사항 신설,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#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,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「공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, 심의사항 등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히 하고 심의생략 가능대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.
- 안 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「공유재산법」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
※ 법 개정으로 “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 신설되어 매년 다음 회계연도 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에 걸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·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

- 안 제15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30조는 「공유재산법」 용어 개정에 따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‘사용·수익허가’를 ‘사용허가’로 법령에 맞게 고침.
- 그 밖의 개정 조항(안 제1조의2, 제6조, 제12조, 제13조, 제25조, 제27조, 제30조, 제31조, 제36조, 제73조)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제명, 조문 및 조문번호 변경, 띄어쓰기 교정, 약칭 사용 등을 정비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2. 4.21.시행)되었음.
- 이에 따라 개정 전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하여 재산 취득·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과 토지 면적을 정함.
- 그 외 개정 조항은 상위법령과 타 법령 개정 관련 및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[법률 제18086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b>“사용·수익허가”</b>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8. (생략)</p> <p style="color: red;"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b>“사용허가”</b>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b>“변상금”</b>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한 자(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<b>“무단점유자”</b>라 한다)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</p>
<p><b>제2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</b>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<b>제2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</b>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<b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<b>“관리계획”</b>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</p>	<p><b>제10조(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·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<b>“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”</b>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

<p>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·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</li> <li>2. 공유재산 관리·처분의 총괄계획</li> <li>3.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
<p><b>제11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</b>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“공유재산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<b>제11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</b>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.</p>

<p>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</p> <p>2.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1.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p> <p>2.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,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,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,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</p> <p>3.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p> <p>4.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</p>
<p><b>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</p> <p>2.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</p> <p>3.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</p> <p>4.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·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<b>호선하여 선정한다.</b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</p> <p>2.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</p> <p>4.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</p> <p>5.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</p> <p>6.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<b>호선한다.</b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32455호, 2022. 2. 18., 타법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32601호, 2022. 4. 20., 일부개정]</p>
<p><b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</b>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<b>관리계획</b>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 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</p> <p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 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<b>관리계획</b>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<b>하여야</b>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<b>관리계획</b>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다른 법률에 따라 <b>관리계획</b>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·처분</p> <p>10. ~ 12. (생략)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b>관리계획</b>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<b>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</b>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<b>공유재산관리계획</b>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</p> <p>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<b>공유재산관리계획</b>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<b>해야</b> 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<b>공유재산관리계획</b>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다른 법률에 따라 <b>공유재산관리계획</b>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·처분</p> <p>10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b>공유재산관리계획</b>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</p> <p>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1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⑦ 이 조에서 “기준가격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</p> <p>1. 토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]</p> <p>2. 건물 가. ~ 다. (생략)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</p> <p>3. (생략)</p>	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</p> <p>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1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이 조에서 “기준가격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</p> <p>1. 토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]</p> <p>2. 주택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&lt;삭제&gt;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의3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(이하 “공유재산심의회”라 한다)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p> <p>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</p> <p>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</p>

	<p>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--	---

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  
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67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, 기타 자치법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(안 제11조)

나. 용어의 약칭 사용, 기호처리 등 자치법규 정비(안 제3조, 안 제17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2.10.13.~11.2./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방식 신청사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함.
  -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,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, 고지서 1장당 250원 → 800원
  -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,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, 고지서 1장당 600원 → 1,600원
- 안 제3조, 안 제17조의2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법령 제명에 홑낫표(「」)를 포기하고 용어 약칭을 정비함.

### ○ 검토 결과

- 지방세 납부 방식 신청사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규정된 상한액까지 확대하고 맞춤법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세특례제한법

**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**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이체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17. 12. 26., 2021. 12. 28.>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**부 칙 <법률 제18656호, 2021. 12. 28.>**

제16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)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·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